

12-다. 장학금 수혜 현황

12-다-1. 장학금 수혜 현황

■ 공시지침

【공시기관】 : **대학** 대학원 **전문대학** 대학원대학

【원자료조사시기】 : 2026년 7~8월(장학금 공시조사)

【공시시기】 : 2026년 8월

【공시방법】 : 간접입력(한국장학재단)

【공시내용】 : 2025학년도 1, 2학기 장학금 수혜 현황

【공시양식】 : 다음 양식 적용(자료기준일: (재학생) 2025. 4. 1. 및 10. 1., (장학금) 2025학년도)

○ 대학, 전문대학

(단위: 명, 원)

장학금 현황										
기준연도	단과대학	학과	구분	학과특성	학기	재학생 (A)	교외			
							소계	국가	지방자치단체	사설 및 기타
			합계							

장학금 현황									
교내(C 포함)							총계 (B)	교내 외국인유학생 (외국인전형, C)	재학생 1인당 장학금 (D=B/A)
소계	성적우수 장학금	저소득층 장학금	근로 장학금	재난 장학금	교직원 장학금	기타			

○ 대학

(단위: 원)

구분	학비감면 준수 여부					
	학부		대학원		학부+대학원	
10% 규정 준수여부	금액	등록금수입 총액	금액	등록금수입 총액	금액	등록금수입 총액
30% 규정 준수여부					금액	

○ 전문대학

(단위: 원)

구분	학비감면 준수 여부	
	금액	등록금수입 총액
10% 규정 준수여부		
30% 규정 준수여부	금액	

■ 검증사항

<장학금 현황>

- 재학생 수는 '0명'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지급금액은 '0원'이 아닐 경우 오류로 판단되므로 검증하여야 함
- '재학생'은 '학생 1인당 장학금'을 산출하기 위한 입력항목으로, 전년도(2025. 4. 1. 기준, 2025. 10. 1. 기준) 재학생과 일치하여야 함

<학비감면 준수 여부>

- 사립대 : 등록금수입 총액은 2025년 등록금회계 자금계산서 기준

■ 작성지침

<공통사항>

- '관련 법규'('국립학교설치령', 「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」 등)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가 면제되는 경우 등록금수입 및 장학금 입력 대상에서 제외함(예 : 「국립학교설치령」 제16조, 「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」 제12조 등)
- 대응투자 : 대응자금비율이 적용되는 대응투자의 경우, 교외와 교내 대응자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입력함

예시

- 사립대의 보훈 자녀장학금의 경우, 국가·교내의 대응자금 비율이 50 : 50이므로, '교외-국가'와 '교내-기타'에 50%씩 나누어 입력
-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, '교외-국가'와 '교내-근로' 양쪽에 국가보조금과 교내 대응자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입력함

<장학금 현황>

- 2025. 4. 1., 10. 1. 기준 재적 학생(재학생, 휴학생, 학사학위취득유예생) 중 2025년 1, 2학기에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은 모두 포함
- ※ 교환연수생, 방문학생, 시간제학생, 여학연수생, 교육과정 공동운영 외국 학생(공동학위·복수학위 과정 유학생)은 제외
- ※ 회계연도 중 재적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해 자퇴 또는 제적된 경우라도 지급받은 장학금은 입력하고 반환된 금액은 제외

참고

<장학금 인정 범위>

○ 교내 장학금

: 2025년도 각 학교의 대학관계규정에 공식적으로 명시된 장학금으로 대학 내의 등록금 및 기금 등의 자체 예산에서 지급한 교내 장학금(교육부 대학장학과-4299호, 2012.12.8.)이면서, 사립대는 2025년도 교비회계 자금결산서에, 국공립대학은 2025년도 일반회계·기성회계·대학회계·발전기금회계의 세출결산서에 반영된 장학금(단, 관련 규정에 명시되었더라도 장학목적 외로 지급된 경우 장학금으로 인정하지 않음)

※ 장학목적으로 지급한 교내 장학금이란?

: 대학관계규정에 공식적으로 명시된 장학금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조해 주는 돈이나 학문의 연구를 돕기 위하여 지급하는 장려금 등 학업과 연관성 있는 활동에 대해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지급되는 등록금, 학업 장려비, 생활비, 실습비 등의 금품을 말함. 단, 근로장학금, 봉사장학금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함

○ 교외 장학금

: 외부재원으로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으로 사립대는 2025년도 자금결산서에, 국공립대학은 2025년도 세출결산서에 반영된 장학금. 단, 장학목적 외로 지급된 경우 장학금으로 인정하지 않음

※ 결산에 반영되지 않은 장학금에 대한 예외 인정 : 장학금 현황의 교외 장학금의 경우, 예외적으로 회계(결산) 미반영액도 공시대상에 포함. 단, 제3자 관점에서 인정가능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대학이 확보 및 보관하여야 함(예 : 외부장학단체가 대학에 발송한 공문 등)

: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I 유형을 모두 수혜하여 대출금과 장학금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경우 등록금 초과금액이 자동 상환 처리되어 결산에 반영되지 않음

참고

→ 결산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함
 (예: 등록금 500만원,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400만원, 국가장학금 I 유형 300만원 수혜 시, 200만원이 자동 상환 처리되어 학교에 100만원만 지급되더라도 교외-국가에 300만원으로 입력)
 ※ 장학목적으로 지급한 교외 장학금이란?
 : 객관적 입증자료에 명시된 장학금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조해 주는 돈이나 학문의 연구를 돕기 위하여 지급하는 장려금 등 학업과 연관성 있는 활동에 대해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지급되는 등록금, 학업장려비, 생활비, 실습비 등의 금품을 말함. 단, 근로장학금, 봉사장학금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함
 * 군 가산복지지원금(국방부)은 2018년부터 장학금에서 제외함

【학기】 : 1학과 2학기 구분하여 입력함, 계절학기에 수혜한 장학금도 포함하여 입력하며, 하계는 1학기에 동계는 2학기에 입력함

【재학생】 : 2025년 1학기(2025. 4. 1. 기준)와 2학기(2025. 10. 1. 기준)에 해당하는 재학생 수를 입력함

【교외 장학금】 : 외부의 재원으로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으로 재원에 따라 국가/지방자치단체/사설 및 기타로 구분함

【교외-국가】 : 국고금 재원으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(국비장학금 등)을 입력함

※ 사립대의 보훈 대상자 자녀에게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장학금 포함
 (예: 보훈장학금 입력 기준)

설립구분	보훈장학금 지급 대상	교외-국가	교내-기타	설립구분	보훈장학금 지급 대상	교외-국가	교내-기타
국/공립	본인	-	100%	사립	본인	-	100%
	자녀	-	100%		자녀	50%	50%

※ 국/공립대학의 국가유공자 본인, 자녀 및 사립대의 국가유공자 본인, 자녀(50%) 대상 보훈장학금은 교내-기타에 해당함

【교외-지방자치단체】 : 지방자치단체(시군구 및 교육청) 재원으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을 입력함

【교외-사설 및 기타】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일반 기업체, 민간단체, 기부자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입력함

※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지만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원으로 조성되어 지급한 장학금은 '사설 및 기타'에 입력함
 (예: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고로 지급되는 장학금은 '국가'에 입력하나, 예외적으로 기부금으로 조성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'사설 및 기타'에 입력)

【교내 장학금】 : 학생에게 지급된 교내 장학금의 수혜 명목(지급사유)에 따라 성적우수/저소득층/근로/재난/교직원/기타로 구분하여 입력

※ 외국인전형 장학금 수혜현황을 추가로 입력하므로 기존 유형구분별 장학금 수혜현황 및 교내 장학금 총계에는 외국인전형 장학금 수혜현황이 포함됨

※ 장학금의 수혜명목(지급사유)이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(예: 재난 피해를 입은 학생이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) 대학이 판단하여 1개의 장학금 유형으로 입력(중복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)

【교내-성적우수장학금】 :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입력함

※ 성적우수장학금 수혜자가 저소득층인 경우, 대상자의 소득기준이 아닌 장학금 수혜 명목인 성적우수장학금으로 입력함

※ 신입생(내신, 수능, 논술, 면접, 수상경력 등 대학별 입학사정관제에 준함) 및 편입생은 입학성적이 학업성적임

【교내-저소득층장학금】 : 각 대학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입력함

※ <학비감면 준수여부>의 30%규정 준수여부는 교내 장학금 종류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자가 학비를 감면 받았을 경우도 인정함

【교내-근로장학금】 : 교내·외 특정 장소에 배치되어 일정시간 근로한 자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입력함(예: 국가근로장학금 중 대학 대응투자금액 및 대학자체 근로장학금)

【교내-재난장학금】 : 각 대학이 재난을 사유로 지급한 장학금을 입력함

【교내-교직원장학금】 : 해당 대학의 재직 교직원 또는 그 가족 등을 위해 지급한 장학금을 입력함

※ 대학 외(자매재단이나 동일법인, 타대학 등) 교직원에게 지급한 교직원장학금은 '교내-기타장학금'으로 분류함

【교내-기타】 : 성적우수장학금, 저소득층장학금, 근로장학금, 재난장학금, 교직원장학금을 제외한 장학금을 입력함

【교내 외국인유학생(외국인전형)】 : 외국인 대상 입학전형(외국인(특별)전형 및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등)으로 입학·편입학한 재직 외국인유학생의 교내장학금 수혜금액을 입력함

※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에 근거하여, 외국인(제29조제2항제2호),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(제29조제2항제6호), 전과정 해외이수 외국인(제29조제2항제7호)을 대상으로 입력하며, 재외국민(제29조제2항제2호), 북한이탈주민(제29조제2항제6호) 및 전 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(제29조제2항제7호)은 제외

※ 외국인 대상 입학전형 외의 전형으로 입학·편입학한 재직 외국인유학생의 교내장학금 수혜금액은 제외

【재학생 1인당 장학금 합계】 : (교내 및 교외 장학금의 합 / 재학생 수)

※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산출 시 재학생 수는 '(2025. 4. 1., 10. 1. 기준 재학생 수의 합) / 2(학기)'로 산출

※ 학과명칭 변경, 신설, 폐과, 학부제 등으로 인해 재학생이 없는 학과 또는 학부제의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의 비고란에 특이사항을 명기함

〈학비감면 준수 여부〉

【학비감면 준수 여부】 :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제3조제2항 준수 여부

※ 본교와 분교가 나뉜 경우는 본교와 분교가 각각 입력(캠퍼스는 본교에 통합 입력)

【10%규정 준수 여부】 : 당해연도 등록금수입 재원으로 면제·감액·(부득이)사후 지급된 금액을 입력함(계절학기 제외)

【30%규정 준수 여부】 : 당해연도 등록금수입 재원으로 경제사정 곤란자에게 면제·감액·(부득이) 사후 지급된 금액을 입력함(계절학기 제외)

※ 장학금 종류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경제사정 곤란자가 학비를 감면받았을 경우도 인정함

【등록금수입총액】 : 결산기준의 등록금수입 총액(수강료수입 및 계절학기 제외)을 입력함

※ 등록금수입총액 = 입학금 + 수업료 + 기성회비

※ 사립대: 2025년 등록금회계 자금계산서 기준

■ 참고사항

- 장학금 수혜 현황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
- 한국장학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
-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과정은 장학금현황 및 학비감면 준수(등록금수입, 10% 감면액, 30% 감면액) 관련 내역을 학부에 입력
- 4. 1. 재학생 수는 2025년 <4-마> 재학생 현황, 10. 1. 재학생 수는 2025년 교육기본통계 하반기 조사의 재학생 현황 연계 활용
- 학비감면 준수여부는 대학 장표에 대학 부설 대학원의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